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한길회계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당해연도 근로소득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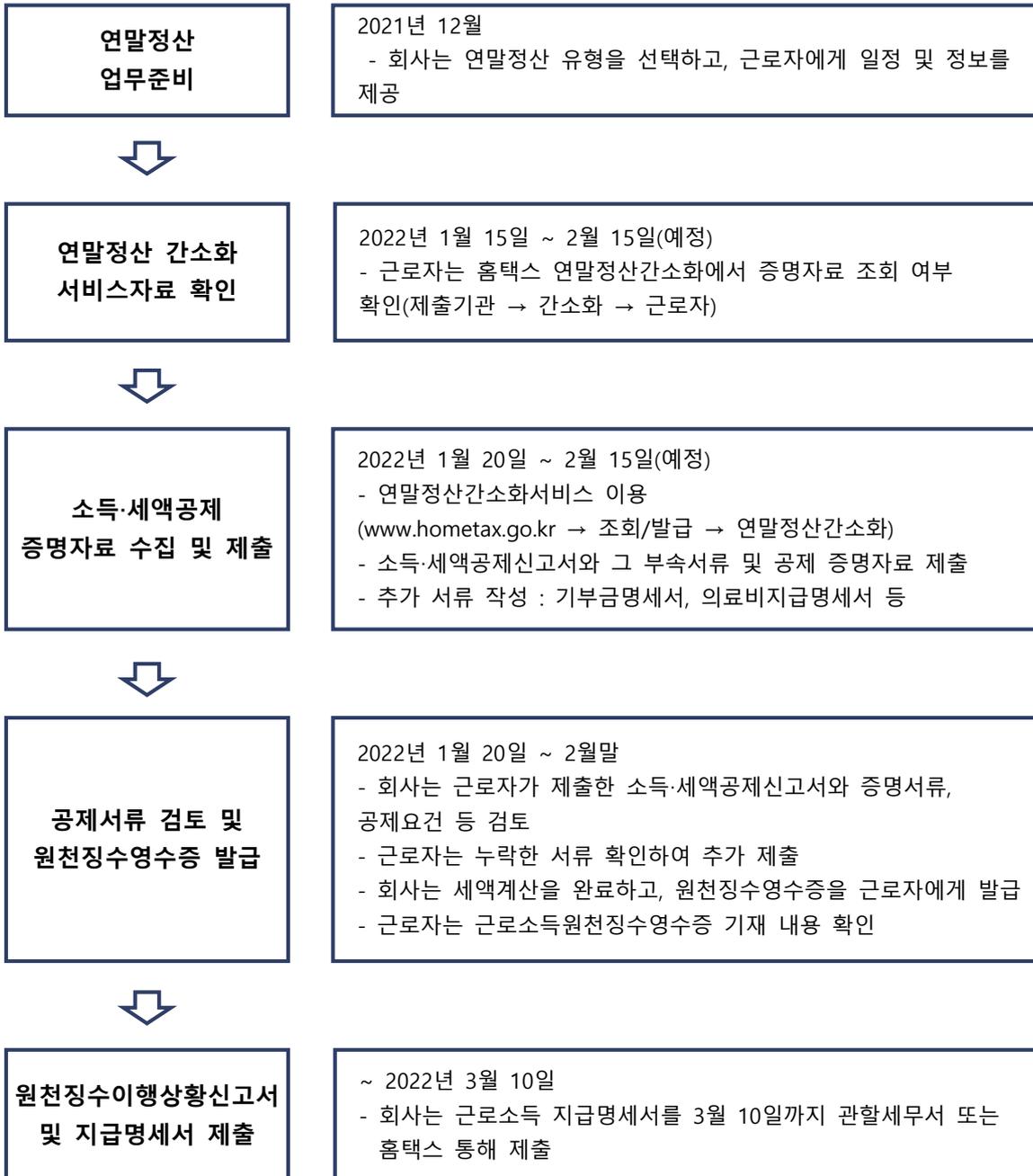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당해연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고, 적은 경우 추가로 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 ①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 ③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④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장애인 증명서 등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
- ⑤ 전 근무지 관련(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의 근무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 연말정산 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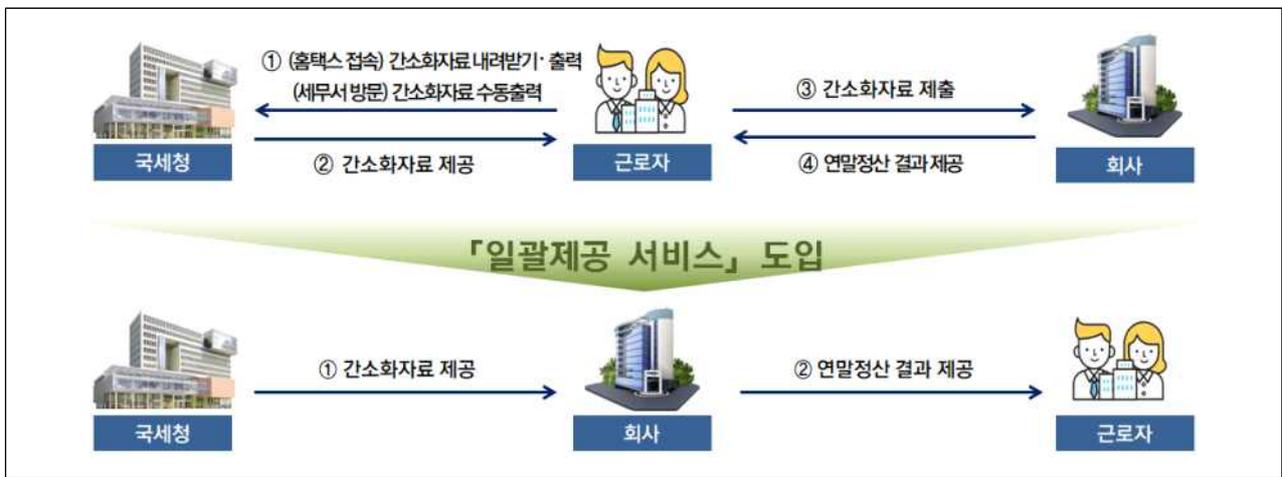


4. 변경사항¹⁾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회사가 정리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021년 10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하여 확인(동의)하여야 하고, 국세청은 확인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1) 참고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1.10.29.)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한해 제공되고,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사용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신용카드 항목별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근로자가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21.11.19.까지 운영).